
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이훈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473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3. 31.

발의자 : 이훈기 · 노종면 · 강유정

신장식 · 허종식 · 김태선

김정호 · 김우영 · 조인철

강준현 · 위성락 · 박수현

송재봉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 · 공공성 유지 및 공적책임 준수 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보도나 논평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심의하여 심의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음.

그런데 보도 · 논평의 공정성에 관한 심의는 정치적 · 사회적 민감성을 지닌 사안이 많아 정치적 편향이나 특정 이해관계가 개입될 여지가 있고 언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, 보도 · 논평에 대한 심의 결과 제재조치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보다 객관적이고 신중한 심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.

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보도 · 논평의 공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제재조치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정족수를 의원 7인 이

상으로 확대함으로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의 객관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함(안 제22조제5항 신설).
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「방송법」 제3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보도 · 논평의 공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재조치(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제외한다)를 정하려는 때에는 위원 7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2조(회의 등) ① ~ ④ (생략) <u><신 설></u></p> <p><u>⑤ ~ ⑦ (생략)</u></p>	<p>제22조(회의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<u>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「방송법」 제3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보도·논평의 공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재조치(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제외한다)를 정하려는 때에는 위원 7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u> <u>⑥ ~ ⑧ (현행 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)</u></p>